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8. 4.부터 9. 14.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6. 18.),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현행	개정안
제5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u>사업자</u> 및 그 사업자의 <u>임직원으로서</u> 해당 위반행위에 <u>관여한 사람</u> 은 제외한다.	제51조(포상금의 지급) ① ----- ----- ----- ----- -----.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 ----- <u>사업자</u> <u>인</u> 경우는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의 한도에서 <u>공정거래위원회</u> 가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u>공정거래위원회</u> 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절차·방법과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공정거래위원회</u> 가 정하여 고시한다.